

심사결과보고

의안 번호	의안명	심사결과	비고
4581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안 번호	4581
----------	------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 제 복 지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경제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2026.7.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지원 대상이 유치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필요성이 감소하여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특정 성별 위원의 위촉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안 제8조제6항)
 - 위원 임기 삭제 및 위원회 구성·해산 규정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류옥화)

- 본 개정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따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법적 취지에 부합하며, 자치구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균형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 빈도가 낮아진 위원회를 비상설 체제로 전환(임기 삭제 및 구성·해산 규정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81
----------	------

제출연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서구청장

1. 제안이유

당초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해당되지 않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 범위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심의 안건 발생 빈도가 감소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정 성별 위원의 위촉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 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안 제8조제6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마.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

-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개선의견 반영

5) 입법예고 : 2026. 5. 22. ~ 6. 11. / 제출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①·② (생략)	제8조(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 <u>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	<u>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 12. 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